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나47876(본소), 2023나47883(반소) 판결 [계약금 반환
등 청구 · 위자료]

재판경과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나47876(본소), 2023나47883(반소)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2가단272131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이동근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4. 3. 14.

판결선고 2024. 4. 18.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2가단272131(본소), 2023
가단214590(반소)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본소 : 주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44,000,000원 및 그 중 7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7.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72,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1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판결 중 본소 청구에 관한 부분을 본소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 : 제1심판결의 본소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반소 부분을 취소하고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모두 제1심에서의 각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5면 1, 2행의 “매매계약서(안)을 송부하였다.”를 “매매계약서(안)을 작성하여 매도인 부분에 직인을 찍은 후 송부하면서 원고가 이에 동의하면 날인하여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6면 11행의 “이 사건 매매계약”부분을 “이 사건 매매계약은”으로 고치고, 제16행의 “7,200만 원”을 “7,200만 원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8면 13행의 “보면,” 다음부터 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는 D회사 H콘도 축을 통해 G에게 이 사건 목적물을 7억 2,000만 원에 매도하길 원한다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원고는 위 G으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목적물을 7억 2,000만 원에 매도하려는 의사가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이를 승낙한 후 G으로부터 교부받은 피고의 계좌로 2022. 7. 19.경 계약금 7,2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위 일시경에 이 사건 목적물을 7억 2,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사합치가 이루어져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 10면 18, 19행의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약금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를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성립될 당시인 2022. 7. 19.경 위약금 약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원고는, 피고가 위약금 약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자인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기각을 구하면서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약금 약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자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1면 5행의 “다.” 뒤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주위적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불성립하였다는 전제에서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따로 살피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차은경, 판사 장재윤, 판사 김우정